

경운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원의 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구분 및 정의) 교원의 업적은 교육, 봉사, 산학 및 연구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1. 교육업적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봉사업적이란 교원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봉사활동 실적을 말한다.
3. 산학업적이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와 교류한 실적을 말한다.
4. 연구업적이란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창의적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물, 또는 교내에 기여한 정책연구 결과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업적) 업적평가는 최근 평가대상기간의 업적에 대해 실시하되, 당해년도에 평가 받지 못한 업적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익년도에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예외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업적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1. 휴직, 휴가, 징계의 사유에 의해 평가대상기간 중 각 학기 단위로 교육, 산학 및 봉사, 연구 업적 자료가 없는 경우
2. 국외여행 교원 또는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각 학기 단위로 교육, 산학 및 봉사, 연구업적 자료가 없는 경우
3. 다만, 연구년 활동기간은 연구업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

제2장 평가절차 및 기구

제6조(평가 대상기간) ① 업적평가는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년 1회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임용일이 업적의 평가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한 학기만의

업적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업적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심의
2. 교원업적 평가
3.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4. 기타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절차) ① 교원은 평가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한 평가조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9월 30일 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각 해당 행정부서장은 증빙자료 및 개인별 평가조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학처장은 확인된 평가 조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1.10.01.>

③ 위원회는 10월31일까지 업적평가를 완료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학처장은 1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9조(이의 신청 및 처리) 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조서 및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재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준

제10조(교육업적) ① 교육업적은 강의, 학생지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벽강교양대학 소속 비정년계열 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시수를 학점당 2점으로 계산하여 교육업적영역의 연간 최저평점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점으로 교육업적 연간 총점 1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의 교육역량 및 수업개선을 위해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업적평가 점수로 가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점으로 교육업적 연간 총점 1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참여실적(1회당 1점)
2. 특성화분야 교과목 개발 또는 운영(건당 2점)
3. 특성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건당 2점)
4. 강의공개(MOOC, OCW, 동영상 등)(건당 2점)
5. 새로운 교수법 및 강의방식 다양화 노력(건당 2점)
6. 외국어강좌(강의전부를 외국어로 진행한 강좌)(학점당 2점)
7. 강의우수교원(학기당 5점)
8. 강의포트폴리오 작성(과목당 2점)
9. 기타 총장의 승인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산학 및 봉사업적) ① 산학 및 봉사업적은 행정보직(처장) 교원과 그 외 교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행정보직 교원은 행정보직 수행과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교원은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별표 3-1】 및 【별표 3-2】와 같다.

② 벽강교양대학 소속 정년계열 교원은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강의시수를 학점당 5점으로 계산하여 산학업적영역의 연간 최저평점 20%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점으로 산학업적 연간 총점 7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학업적 중 공동 실적물의 경우 2인 공동은 1인 단독업적 배점의 70%, 3인 공동은 50%, 4인 이상 공동은 30%로 한다. <신설 2020.03.01.>

제12조(연구업적) ① 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논문은 연구실적 환산비율을 적용한다. 공저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03.01.>

1. 주저자(책임) : $\text{평가배점} \times \frac{2}{n+1} \times 100\%$ (n : 공저자 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한다.

2. 공동저자 : $\text{평가배점} \times \frac{1}{n+1} \times 100\%$ (n : 공저자 수)

3. 삭제 <2020.03.01.>

③ 연구업적 중 논문을 제외한 저서, 작품수상, 전시 등에 대한 공동 실적물의 경우 2인 공동은 1인 단독업적 배점의 70%, 3인 공동은 50%, 4인 이상 공동은 30%로 한다.

<개정 2020.03.01.>

제13조(연구업적물 심사) ① “삭제”

② 본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③ 교원업적평가를 위한 연구실적물 심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다.

④ 정년이 보장된 교원도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은 연구업적영역의 ‘저서’부분의 실적을 각 배점기준에 5%의 점수

를 가점하여 연구업적평가점수에 반영한다.

⑥ <삭제>

제14조(교원업적의 예외 평가) ① 제5조 제2호의 사유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는 연구업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년도 교육, 산학 및 봉사업적은 업적평가기간에서 제외 한다.

② 본 규정의 내용상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해석에 일임한다.

제15조(중복 연구업적의 예외평가) ① 중복 및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복 및 표절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피평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누적인정 연구업적) 교원의 기간제, 승진 및 정년보장 교원임용평가를 위해서는 현 직위 평가대상 기간 중의 연구업적은 누적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업적 증빙자료) 연구업적 평가를 위해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우리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0.03.01.>

1. 저서 : 원본 또는 사본
2. 논문 : 학술지, 논문집 원본(별쇄본) 또는 사본
3. 학술대회 발표 : 학술대회 프로그램, 초록집 원본 또는 사본
4. 공연, 발표 : 팸플렛 원본(관계증빙자료) 또는 사본
5. 기타 : 관계 증빙자료(연구보고서의 경우 보고서 포함)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 평가 결과는 교원의 기간제 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 임용, 교내연구비 지급 및 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평가 점수 산출시 당해연도 점수미달자 중 유예교원은 다음연도 결과 산출시 미충족 점수를 제외하고 인정한다.

제19조(정년계열 교원 재임용기준) ① 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100%까지는 산학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저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산학은 영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03.01.>

직 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합계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	연구업적	
조교수	4년	300	260	1,200	240	2,000
부교수	6년	450	390	1,800	360	3,000
교수	10년	750	650	3,000	600	5,000
산학협력중점	2년	150	0	800	0	950

② 삭제 <2020.03.01.>

③ 삭제 <2020.03.01.>

④ 정관 제39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된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및 평점기준은 환산하여 적용한다.

⑤ 비행교원의 재임용은 교육, 연구업적 만을 평가한다. 【별표 5】 비행교원업적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3.01.]

제19조의 2(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기준) ①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2년 단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누적(6년간) 합산점수로 평가하고, 6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최근 6년간 평가점수만 적용한다.

② 비정년계열 교육연구중점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육연구중점교원의 연구업적 중 연간 75점(2년간 150점)은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산학운영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03.01.>

구분	직 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합계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	연구업적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교육연구중점	2년	150	160	0	300	610
	산학협력중점	1년	75	0	400	0	475

③ 「경운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 또는, 학과(부) 소속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이 작성하는 정성적 평가결과가 재임용(재계약) 평정표 취득점수의 평균 60% 취득을 최소요건으로 하며,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재계약)하지 아니한다.

④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 또는, 학과(부) 소속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각각 평정표의 취득점수가 평균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중 1인이라도 50%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장(교학처장)은 【별표6】 서식에 따른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평정표(재계약)를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01.>

⑤ 비정년계열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 부족에 따른 유예기준은 영역별 업적평가 점수 부족 시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소속 부서장(단과대학장) 또는, 학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03.01.]

제20조(승진임용기준) ① 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각 영역별 최저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20%이상은 국내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이어야 하며, 각종 유명학술지등에 게재되어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승진시 우선 배려한다. 단,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100%까지는 산학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최저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봉사업적 평점이 연간 75점 이하이면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

② 비행교원의 승진임용심사평정에 필요한 업적은 교육,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5】 비행교원업적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③ 벽강교양대학 소속교원의 승진 임용심사평정에 필요한 업적은 각 영역별 최저평점기준으로 하되, 연구업적 최저평점의 50%까지 교육업적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위	평가대상기간	영역별 최저평점				비고
		교육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	연구업적	
조교수→부교수	6년	450	390	1,800	360	
부교수→교수	6년	450	390	1,800	360	

제21조(업적의 상대평가)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또는 직위별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 교원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사무의 관리) 업적평가사무 총괄은 교학처에서 관리하고, 영역별 평가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다. <개정 2021.10.01.>

1. 교육업적 : 교학처
2. 봉사업적 : 교학처와 기획조정처
3. 산학 및 연구업적 : 산학연구처

제24조(공개금지 및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9년 8월 교원업적평가(평가 기간 : 2018.09.01.~2019.08.31.)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학년도 2학기 재임용 심사대상자의 업적평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제19조의2 각 항의 적용 기준은 2021학년도 재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2 제1항의 누적 합산 점수 평가 기준 적용은 재임용 심사 평가대상자가 두 번째 이상 심사대상자일 경우에는 2022학년도 재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21학년도 2학기 재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09.01.>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년간 150점)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학기)	배점 한도 (연간)	세부기준																			
강의 (90)	수업준비	1. 수업계획서 제출	5	10	① 수업계획서 입력 준수 : 입력시기(입력확정시기 기준) 및 입력강좌 강좌별 수업계획서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 산술식 = 5-{(강좌별 수업계획서 입력 감점점수) / 강좌 수} 예. 담당강좌 3개, 3개 강좌 감점점수는 5점, 0점, 4점임 수업계획서입력점수 -5-Σ (3개 강좌 수업계획서 입력과 관련 감점점수)/3개 강좌 =5-[(5+0+4)/3]=2점																			
		2. 강의학점	-	10	① 연간 책임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1학점 당 1점 감점 * 총장이 승인한 감면 책임학점 기준																			
	수업운영	3-1. 강의 시간	5	10	① 1일 5시간 이하 : 0점 감점 ② 1일 6시간 이하 : 1점 감점 ③ 1일 7시간 이하 : 2점 감점 * 집중수업 제외, 야간 제외																			
		3-2. 강의 일수			① 주당 3일 : 0점 감점 ② 주당 2일 : 1점 감점 ③ 주당 1일 : 2점 감점 * 감면 책임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이러닝강좌를 제외한 담당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제외																			
		4. 수업관리	5	10	① 수업시간 및 결강 수업시간 무단변경 및 무단결강 1회당 1점 감점 (최대 5점) ② 수업관리 및 평가 민원사항 조치 수업관리 및 평가 민원 미조치* 1회당 1점 감점 (최대 5점) *미조치 : 수업관리 민원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3일 이내, 조치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 교학처에 미제출한 경우 - 산술식 = 5-{Σ(① + ②) / (강좌 수 × 2)}																			
		5. 휴강 및 보강	5	10	①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1주일 이내) 미제출 1회당 1점 감점 (최대 5점) ② 보강실시 : 보강 미실시 1회당 1점 감점 (최대 5점) - 산술식 =5-{Σ (강좌별 ① + ②) / (강좌 수 × 2) }																			
	6. 출결관리	5	10	① 스마트출결시스템 실시 준수 강좌별 스마트출결시스템 1회 미실시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 산술식 = 5-{Σ(강좌별 스마트출결시스템 미실시 감점점수) / 강좌 수}																				
	수업평가	7. 성적평가 관련기간 (각 항목별 최대 5점)	5	10	• 성적평가 관련 기간은 성적공시기간, 성적확정기간, 성적평가내역서 제출기간 등을 의미함 ① 성적공시기간 준수 :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② 성적확정기간 준수 :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③ 성적평가내역서 제출기간 준수 :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④ 성적정정 건수 : 1건당 1점 감점 (최대 5점) - 산술식 = 5-{Σ (강좌별 ① + ② + ③ + ④) / (강좌 수 × 4) }																			
		8. 교수자가평가(CQI보고서)	5	10	① 교과목CQI 문항 입력(5점) 기간내 입력 : 5점, 추가기간내 입력 : 3점, 미입력 : 0점 ② 교과목CQI 보고서 작성(5점) 강좌별 교과목 CQI보고서 제출기간 1일 지연마다 1점 감점 (최대 5점) - 산술식 = 5-{Σ(강좌별 교과목CQI 점수) / 강좌 수} ③ 결과값 = (①+②)/2																			
		9. 강의 평가	5	10	① 학생평가점수 : 강좌별 강의평가 평균점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평가기준</th> <th>학생평가점수</th> <th>평가기준</th> <th>학생평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4.5이상</td> <td>15점</td> <td>3.5~3.75미만</td> <td>7점</td> </tr> <tr> <td>4.25~4.5미만</td> <td>13점</td> <td>3.25~3.5미만</td> <td>5점</td> </tr> <tr> <td>4.0~4.25미만</td> <td>11점</td> <td>3.0~3.25미만</td> <td>3점</td> </tr> <tr> <td>3.75~4.0미만</td> <td>9점</td> <td>3.0미만</td> <td>0점</td> </tr> </tbody> </table> ② 중간값 = Σ (강좌별 학생평가점수) / 강좌 수 ③ 결과값 = (중간값/15)*5	평가기준	학생평가점수	평가기준	학생평가점수	4.5이상	15점	3.5~3.75미만	7점	4.25~4.5미만	13점	3.25~3.5미만	5점	4.0~4.25미만	11점	3.0~3.25미만	3점	3.75~4.0미만	9점	3.0미만
	평가기준	학생평가점수	평가기준	학생평가점수																				
	4.5이상	15점	3.5~3.75미만	7점																				
4.25~4.5미만	13점	3.25~3.5미만	5점																					
4.0~4.25미만	11점	3.0~3.25미만	3점																					
3.75~4.0미만	9점	3.0미만	0점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학기)	배점 한도 (연간)	세부기준
강의 (90)	수업역량 강화	①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참여실적	회당 1점	-	-	① 교학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각 사업단에서 '교수법향상 프로그램'으로 승인된 경우 인정하며, 학과 단위의 공식적인 교수법 워크숍 및 회의의 경우 총장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함, 또한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경우 8시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최대 5점을 인정함
		② 특성화분야 교과목 개발 또는 운영	건당 2점			① 대학 차원의 각종 국책사업의 교재개발은 강의계획서에 해당내용(교재 및 교안명, 활용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교학처, CTL, 해당 사업단의 승인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함, 최대 10점을 인정함
		③ 특성화분야 교육과정 개발 또는 운영	건당 2점			① 대학 차원의 각종 국책사업을 위한 전공트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교학처, CTL, 해당 사업단의 확인 및 승인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업적으로 인정함, 최대 10점을 인정함
		④ 강의공개(MOOC, OCW, 동영상 등)	건당 2점			① 강의공개는 교양 및 전공과목을 MOOC, KOCW 기준에 따라(최초 신규개발에 한함) 동영상촬영이나 강의제작도구를 활용하여 강의를 제작하여 10주 이상 교내 또는 교외에 공개한 경우 건당 2점, 최대 10점을 인정함
		⑤ 새로운 교수법 및 강의방식 다양화노력	건당 2점			① PBL(문제중심해결학습), CBL(사례기반학습), 액션러닝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 Flipped 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강의운영방식 등을 적용 등을 말하며, 강의계획서에 해당내용(운영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최대 10점을 인정함
		⑥ 외국어강좌 (강의 전부를 외국어로 진행한 강좌)	학점당 2점			① 교학처에 원어강의 과목으로 등록된 강좌에 한하여 인정함
		⑦ 강의우수교원 16)	학기당 5점			① 강의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교학처 추천교수에 한함
		⑧ 강의포트폴리오 작성	과목당 2점			①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수업내용, 교과목개선(CQI보고서), 수업평가샘플 등을 입력하거나 제출한 경우 과목당 2점을 인정함, 단, 교학처에 등록된 강좌에 한하여 인정, 최대 10점을 인정함
학 생 지 도 (60)	학생지도	1. 학부(과)별 취업률	80%이상 또는 100명 : 20점 70%이상 또는 80명 : 16점 60%이상 또는 60점 : 12점 50%이상 또는 40명 : 8점 50%미만 또는 20명 : 4점	-	20	① 교원업적평가 평정기간에 대학정보공시된 가장 최근 취업률, 유지취업률 활용 ② (취업률 + 유지취업률) / 2 ※ 신설학과 및 졸업생 미 배출학과, 벽강교양대학은 대학 전체 취업률 적용 ※ 소수점 발생 시 첫째자리 사사오입처리 ex) 69.5 → 70점
		2. 학생개별 상담실적	① 80%이상 : 15점 ② 70%이상 : 13점 ③ 60%이상 : 10점 ④ 50%이상 : 7점 ⑤ 50%미만 : 3점	-	15	① 전년도 2학기 상담실적 점수와 당해년도 1학기 상담실적(%)를 더하여 평균 점수로 환산함. ex) 2개 학기 모두 지도교수 배정 : 전년도 2학기 상담 100%, 당해년도 1학기 상담 60% 실시하였을 경우 = (100+60)/2 = 80%, 환산점수 = 15점 ※ 지도교수 미배정 학기는 해당 학기의 학과 평균을 적용함. ※ 벽강교양대학은 대학 전체 상담실적평균을 적용함.
		3. 대학원(일반 및 특수 대학원 포함)석.박사 배출 학생수	지도교수에 한함 석사 : 배출인원 × 2점 박사 : 배출인원 × 3점 공동지도 교수의 경우 1/n	-	5	① 석사 : 배출인원 × 2, 박사 : 배출인원 × 3 ※ 배출인원 : 졸업생에 대한 지도교수 ※ 지도교수에 한함, 공동지도 교수의 경우 1/n으로 함.
		4. 학교 및 동아리 지도실적	1개 동아리(학기당) 지도교수에 한함	-	5	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동안 1학기 이상 활동한 동아리 및 전공동아리 지도교수는 5점을 부여함.
		5. 학부(과) 학생봉사활동 지도실적		-	5	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결과보고제출)된 학과사회봉사활동 지도교수에 한하여 1회 이상 활동 시 5점을 부여함.
	행정협조	6. 학생지도 보고서 및 교학처 서류제출기간	1일 이상 지연시 1점 감점	5	10	① 교학처 제출 현황에 따라 감점함.

【별표 2-1】 <개정 2022.03.0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년간150점)-행정보직자용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세부기준	
행정 보직자 (봉사) (150)	기타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	교내 기타보직 또는 교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 (위원회 중복 인정)	65	① 중복 보직(센터장 이상) : 건당 10점 ② 위원회(행정지원처 등록) : 건당 10점	
	교내활동	학부(과) 홈페이지관리	5	① 학부(과)의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교원 1인에 한하여 5점 부여	
		건축이념 실천정도	10	① 교원의 건축이념 실천에 따라 10점 부여	
		교내 봉사	15	① 장학금 수수·출연 : 교학처, 재무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하여 학교 통장으로 입금된 장학금만 인정 ② 기자재·도서 등의 기부채납 : 행정지원처, 도서관 등 관련 부서를 통해 학교 기자재 및 도서 등 자산으로 등록 된 것만 인정. 기자재의 경우 기부채납 물품의 구입가액 명시 ③ 발전기금 유치 : 기획조정처 등 관련 부서를 통하여 학교 통장으로 입금된 발전기금만 인정 ④ 교육기부, 재능기부 : 교내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간, 활동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만 포함	
	국책사업 및 대학발전계획 집필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 관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학발전계획> * 집필 - 6개월 이상 : 15점 - 3개월 이상 : 10점 - 3개월 미만 : 5점 * 디자인 - 4주 : 15점 - 3주 : 10점 - 2주 : 5점 - 1주 : 1점	15	① 국책사업, 대학발전계획 집필 : 집필위원 구성 승인 공문 또는 보고서 내 집필자 명단 등 집필참여를 증빙 ② 다만, 대학발전의 기여 및 집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한 사업에 한하여 동일 점수 또는 비율을 적용하여 교내봉사(동일 점수) 및 대외활동(동일 비율)의 점수를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음	
	대외활동	학술단체 임원	건당 3점	10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사)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한함 ② 국가기관(기초자치단체이상) 또는 기타 공인단체(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강의 및 자문활동 (외부활동 승인원 및 공문접수 처리한 경우에 한함) ③ 전공과 관련하여 일간신문 또는 권위 있는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들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사회기관 강연, 자문 봉사			
언론매체 기고, 출연					
활동성과	학부(과)별 신입생 충원율	① 100% : 15점 ② 90%이상 : 13점 ③ 80%이상 : 11점 ④ 80%미만 : 9점	15	① 교원업적평가 평가기간에 대학정보공시된 가장 최근 신입생 충원율 활용 * 벽강교양대학교교원 등의 경우 : 대학 전체 충원율	
	학부(과)별 재학생 충원율	① 90%이상 : 15점 ② 85%이상 : 13점 ③ 80%이상 : 11점 ④ 80%미만 : 9점	15	① 교원업적평가 평가기간에 대학정보공시된 가장 최근 재학생 충원율 활용 * 벽강교양대학교교원 등의 경우 : 대학 전체 충원율	

【별표 2-2】 <개정 2022.03.01.>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년간150점)-행정보직자 제외용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세부기준	
전체 교원 (봉사) (150)	기타보직 또는 위원회 활동	교내 기타보직 또는 교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실적 (위원회 중복 인정)	35	① 처장급 이하의 보직(중복 보직 인정) : 건당 10점 ② 위원회(행정지원처 등록) : 건당 10점	
	교내활동	품위유지 및 제 규정 준수	① 경위서 작성 : 건당 10점 감점 ② 서면경고 : 20점 감점 ③ 경징계 이상 : 30점 감점	30	①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경위서 작성 및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감점 ② 교내 제규정 및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경징계 이상 받은 경우 감점
		학부(과) 홈페이지관리		5	① 학부(과)의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교원 1인에 한하여 5점 부여
		건학이념 실천정도		10	① 교원의 건학이념 실천에 따라 10점 부여 (ex, 선행상 수상, 미담 신문기사, 효행상 수상 등)
		교내 봉사	<장학금 수주·출연, 발전기금 유치> - 200만원 이상 : 15점 - 150만원 이상 : 12점 - 100만원 이상 : 9점 - 50만원 이상 : 6점 <기자재 기부채납> - 5,000만원 이상 : 15점 - 3,000만원 이상 : 12점 - 1,000만원 이상 : 9점 <도서 기부채납> - 200권 이상 : 15점 - 140권 이상 : 10점 - 70권 이상 : 5점 <교육기부, 재능기부 등> - 건당 3점	15	① 장학금 수주·출연 : 교학처, 재무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하여 학교 통장으로 입금된 장학금만 인정 ② 기자재·도서 등의 기부채납 : 행정지원처, 도서관 등 관련 부서를 통해 학교 기자재 및 도서 등 자산으로 등록 된 것만 인정. 기자재의 경우 기부채납 물품의 구입가액 명시 ③ 발전기금 유치 : 기획조정처 등 관련 부서를 통하여 학교 통장으로 입금된 발전기금만 인정 ④ 교육기부, 재능기부 : 교내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간, 활동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만 포함
	국책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 관평가인증, 정부재정지원 사업 등)	<국책사업 및 대학발전계획> * 집필 - 6개월 이상 : 15점 - 3개월 이상 : 10점 - 3개월 미만 : 5점 * 디자인 - 4주 : 15점 - 3주 : 10점 - 2주 : 5점 - 1주 : 1점	15	① 국책사업, 대학발전계획 집필 : 집필위원 구성 승인 공문 또는 보고서 내 집필자 명단 등 집필참여를 증빙 ② 다만, 대학발전의 기여 및 집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한 사업에 한하여 동일 점수 또는 비율을 적용하여 교내봉사(동일 점수) 및 대외활동(동일 비율)의 점수를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음	
	대외활동	학술단체 임원 및 논문심사 위원 활동	건당 3점	10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사)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실적 및 등재(후)학술지 논문심사 위원으로 활동 ② 국가기관(기초자치단체이상) 또는 기타 공인단체(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강의 및 자문활동 (외부활동 승인원 및 공문접수 처리한 경우에 한함) ③ 전공과 관련하여 일간신문 또는 권위 있는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들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사회기관 강연, 자문 봉사			
		언론매체 기고, 출연			
	활동성과	학부(과)별 신입생 충원율	① 100% : 15점 ② 90%이상 : 13점 ③ 80%이상 : 11점 ④ 80%미만 : 9점	15	① 교원업적평가 평정기간에 대학정보공시된 가장 최근 신입생 충원율 활용 ※ 벽강교양대학교원 등의 경우 : 대학 전체 충원율
학부(과)별 재학생 충원율		① 90%이상 : 15점 ② 85%이상 : 13점 ③ 80%이상 : 11점 ④ 80%미만 : 9점	15	① 교원업적평가 평정기간에 대학정보공시된 가장 최근 재학생 충원율 활용 ※ 벽강교양대학교원 등의 경우 : 대학 전체 충원율	

【별표 3-1】 <개정 2021.09.01.>

산학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년간700점)-행정보직자용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세부기준
행정 보직자 (산학) (700)	보직활동	행정보직(처장)수행	6개월 이상 수행한 보직중 1건만 인정	350	①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해당 보직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이 평가함
	산학협력 봉사활동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① 6개월 이하(50점) ② 6개월 초과(100점)	250	①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체를 위한 국책사업에 대학이 승인하여 기획 및 집필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② LINC+ 사업 등 산학협력단 주관 사업만 인정하나, 대학본부 주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① 제출 건당30점 ② 채택시 건당50점		① 산학협력 관련 각종 아이디어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인정
		교외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	건당 30점		① 각종 산학 협의회나 기관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경우 연간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 로 인정
		삭제 <2020.03.01.>	삭제		삭제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유치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30점		① 국외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인정 ② 국내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인정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발표/패널	건당 20점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인정 ② 교내에서 발표 할 경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 인정(내부기안), FG활동 해당사항 없음
		교외 컨퍼런스/세미나/교육/산학워크샵 참석	건당 10점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인정 ② 전국 규모의 학술행사의 경우 인정 ③ 온라인 교육도 포함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MOU체결	① 국제 건당 20점 ② 국내 건당 10점		① 산학활동에 필요한 기업체나 기관을 우리대학의 가족회사나 협력기관으로 유치하거나 상호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 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가족회사(기관) 유지 및 관리	건당 10점		① 가족회사(기관)로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인정
		(사회단체)사외이사 활동	건당 30점		① 총장이 승인한 (사회단체)사외이사 활동에 한해 인정
		교외관련 심사/평가/출제 위원 활동	건당 10점		① 기초 지방자치 단체급 이상 공인단체에 의해 위촉된 심사, 평가 및 출제위원. 동일기관의 위촉은 1건만 인정
		기술경영자문	건당 20점		①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외부 기술 및 경영 자문활동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정
		기관/단체협력/협정체결	건당 20점		①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활동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정
		외부기관 수상실적	건당 30점		① 기초 지방자치 단체급 이상 공인단체에 의해 수상한 실적만 인정
	기업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① 3개월 이하 70점 ② 3개월 초과 150점	① 총장이 승인한 파견근무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건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업체 현장방문	건당 10점	100	① 산학협력단, LINC+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기준하여 인정(결과보고 출장복명서 증빙만 인정) ② 수요조사서 제출 한 경우만 인정/현장실습지도는 제외한다. ③ 동일 업체 방문 및 활동은 각 종류별 학기별 1건으로 인정
		수요조사			① 현장 실습지도를 위한 활동으로 동일 업체는 학기별 1건으로 인정 ② 교학처(관련부서) 결과보고서(통합)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현장 실습지도	학기당 50점		① 현장 실습지도를 위해 팀 단위나 아이팀 단위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캡스톤디자인지도	건당 20점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과정 1개 반을 유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유치		건당 30점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과정 담당 교과목에 대해 인정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강의		학점당 10점			

【별표 3-2】 <개정 2021.09.01.>

산학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년간 700점)-행정보직자 제외용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세부기준				
전체 교원 (산학) (700)	산학협력 교육활동	산업체 현장방문 수요조사 추수지도 방문	건당 10점	200	① 산학협력단, LINC+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인정(결과보고 출장복명서 증빙만 인정) ② 수요조사서 제출 한 경우만 인정/현장실습지도는 제외한다. ③ 국책사업등 기타 이외의 학과일 경우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 인정) ① 현장 실습지도를 위한 활동으로 동일 업체는 학기별 1건으로 인정 ② 교학처(관련부서) 결과보고서(통합)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① 교학처(관련부서)에 제출된 현장견학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인정 ② 캡스톤디자인을 위해 팀 단위나 아이팀 단위로 지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이나 아이팀 단위로 지도한 "지도교수"만 인정 ① 교학처(행정부서)에 제출된 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학과별 유치 1인에게만 적용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과정 1개 반을 유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과정 담당 교과목에 대해 인정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분야의 교육이나 실험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시간을 단위로 1건으로 인정 ①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교육의 교육과정 개발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인정 ① 관련 교과목에 대한 담당 교원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대표 교원 1인) ①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교학처 제출(총장승인) 인정 <삭제>			
		현장 실습지도	학기당 30점					
		산학관련 현장견학 인솔 캡스톤디자인지도 학생창업지도	건당 20점					
		학생대상 산학특강/세미나 유치 및 주관	건당 10점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유치 산업체계약 교육과정 강의	건당 30점 학점당 10점					
		재직자대상 교육	시간당 5점					
		재직자대상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Lab, 비즈니스Lab 지도	건당 50점 학기당 50점					
		산학교육과정개발	건당 50점					
		<삭제>	<삭제>					
		산학협력 연구활동	산업체 연구비 수혜			100만원당 5점	200	① 대학 및 학부(과)를 위한 연구비 또는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연구비 ②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참여인력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단, 계약의 당사자가 순수 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책사업 등 기술개발과제 및 중소기업센터 등의 과제 중 업체 부담금(대응) 해당 ①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 및 행정부서 인정 결과물에 한해 인정 ② 기부금 약정서에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 관련 부분만 인정 - 신기술, 제품인증서 - 창업관련 사업자 등록증 - 특허 출원원 - 특허 등록증 -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증 - 프로그램등록 확인증
			기부금기탁			10만원당 5점		
			기업부설연구소유치			건당 50점		
			신기술/제품인증			건당 50점		
	신규 교수 창업		건당 150점					
	교수 창업 유지/운영		건당 50점					
	국내특허		① 출원건당 : 20점 ② 등록건당 : 70점					
	국제특허		① 출원건당 : 50점 ② 등록건당 : 100점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		① 출원 건당 : 20점 ② 등록 건당 : 50점					
	프로그램등록	건당 30점						
	기술이전	50만원당 10점	① 기술료 수익(산학협력단 입금일 기준)					
국책사업 기획/집필 위원 참여	① 6개월이하: 50점 ② 6개월초과: 100점	①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체를 위한 국책사업에 대학이 승인하여 기획 및 집필위원으로 참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 연차보고서 등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인정 ② LINC+ 사업 등 산학협력단 주관 사업만 인정하나, 대학본부 주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산학관련 발전 아이디어 제출	① 제 출 : 건당30점 ② 채택시: 건당50점	① 산학협력 관련 각종 아이디어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인정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세부기준
전체 교원 (산학) (700)	산학협력 봉사활동	교외 협의회/기관 위원회 활동	건당 30점	300	① 각종 산학 협의회나 기관에 운영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경우 연간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분야만 인정 ② 리빙랩 프로젝트 활동실적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유치	① 국제 건당 50점 ② 국내 건당 30점		① 국외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② 국내 컨퍼런스 및 세미나는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대표 1명만 인정
		교외 컨퍼런스/세미나 발표/패널	건당 20점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인정 ② 교내에서 발표 할 경우 전체 교원으로 대상으로 한 경우만 인정(내부기안) FG활동 해당사항 없음
		교외 컨퍼런스/세미나/교육/산학워크숍 참석	건당 10점		① 등재(후)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경우 인정 ② 전국 규모의 학술행사의 경우 인정 ③ 온라인 교육도 포함(증빙서 제출)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MOU체결	① 국제 건당 20점 ② 국내 건당 10점		① 산학활동에 필요한 기업체나 기관을 우리대학의 가족회사나 협력기관으로 MOU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가족회사(기관) 유치 및 관리	건당 10점		① 산학활동을 한 경우 인정
		사회단체이사활동	건당 30점		① 총장이 승인한 사회단체이사 활동에 한해 인정
		교외관련 심사/평가/출제 위원 활동	건당 10점		① 기초 지방자치 단체급 이상 공인단체에 의해 위촉된 심사, 평가 및 출제위원 ② 내부기안 승인 된 것만 인정(총장), 교학처 외부활동승인원만 인정
		기술지도·경영자문	건당 20점		①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외부 기술 및 경영 자문활동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정
		기관/단체협력/협정체결	건당 20점		① 산학연구처 및 산학협력단에서 인정하는 활동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정(출장복명서 확인) 가족회사 이외의 활동만 인정
		외부기관 수상실적	건당 30점		① 기초 지방자치 단체급 이상 공인단체에 의해 수상한 실적 중 본인만 인정(산학관련부분만 인정)
		기업체 및 외부기관 파견근무	① 3개월 이하 70점 ② 3개월 초과 150점		① 총장이 승인한 파견근무에 한해 기관별 1건으로 인정 ② 연구년 교원

【별표 4】 <개정 2020.03.01.>

연구업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 문	평가기준	배점기준	세부기준		
수상 및 공훈 (연구 및 기능·예체능)	국제대회 또는 국제단체 수상	100	①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제저명학술지 발행기관 및 저명한 국제단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수여된 상		
	국내전국규모학회 또는 공공단체 수상	50	①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및 공공단체로부터 수여된 상		
	국가훈장	100	①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훈장		
	국가포상	50	① 전공분야의 활동 및 업적을 인정받아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포상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200	① 논문의 형식은 아래와 같아야 하며 중복 또는 표절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형식 : 전공과 관련된 주제로 서론,본론,결론(또는 요약) 및 각주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정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한하지 않음 - 중복논문 : 기 발표된 논문과 연구방법 또는 연구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논문, 또는 전문의 1/3이상인 동일한 논문 - 표절논문 : 타인이 발표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한 분량이 전 논문의 1/5 이상인 논문		
	국제일반학술지	150	② 국제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150	③ 국제일반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국제일반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삭제>	<삭제>	④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및 후보지 ⑤ 국내일반학술지 : 우리대학 연구소 포함(동일한 권·호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2편이내 까지만 인정됨) 국내일반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60			
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200	① 업적평가 기간 중 발표된 논문에 한함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	50	① 국내·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발표자 분포가 3개국 이상)에서 강연,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대회의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		
	국내전문학술대회발표논문	30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학술지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	20	① 국내전문학술대회발표논문 이외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혹은 초록집에 수록된 것(Work shop 포함)		
저서 (단행본)	국외저서	초판	200	① 저작물로 출판된 것으로 한하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부여된 것에 한함	
		개정판	100		
	국내저서	초판	100		
		개정판	50		
	번역서 및 편역서	번역서	초판		80
			개정판		40
		편역서	초판		80
			개정판		40
공모전	국제	특선이상	100	①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상급 예술제(100점), 또는 10개국 이상 참가하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예술제(50점)에 신작품을 초대작가의 자격으로 출품 전시한 경우	
		입선이상	50		
	전국	특선이상	80		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한민국 서예대전 및 미술대전에서 초대 및 추천작가 자격으로 출품 전시한 경우
		입선이상	40		
	지역	특선이상	20		① 광역시·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미술대전, 공예대전, 서예대전, 섬유미술제, 산업디자인, 패션발표회 등
		입선이상	10		
전시회	국제	개인전	150	① 신작으로 구성된 공동 작품전 또는 발표회로서 피평가자의 작품 수가 10점이상인 경우 ② 개인전 :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공연 또는 전시회로서 발표내용이 일관된 주제에 대한 신작품으로 구성된 것 ③ 단체전 :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공연 또는 전시회로서 발표내용이 일관된 주제에 대한 신작품으로 구성된 것	
		초대전/단체전	50		
		심사위원	100		
	광역이상	개인전	100		
		초대전/단체전	30		
기능 및 예체능	국제공인 기능 및 예체능 경기	입상지도	150	① 2개국이상 참가하는 기능 및 예체능 경기로 지도선수 입상시 지도교수만 인정함 금(1위) : 150점 / 은(2위) : 130점 / 동(3위) : 110점	
	국내공인 기능 및 예체능 경기	입상지도	100	① 국내에서 기능 및 체육단체가 실시하는 기능 및 예체능 지도선수 입상시 반드시 지도교수 포함한 내부기안 결재만 인정 ②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경기대회 수상실적 ③ 대회당 최고 순위만 인정 금(1위) : 100점 / 은(2위) : 80점 / 동(3위) : 60점	
특별연구	외부연구비수탁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세부기준 참조	① 배점기준 : (자연계열 등) 30점*(순수간접연구비[만원])/100, (인문사회계열) 60점*(순수간접연구비[만원])/100 ② 순수간접연구비는 연구부서에 적립되는 간접비 ③ 순수개인연구과제(R&D 및 용역관련)만 인정	
		인문·사회계열			
	연구보고서	50	① 총장이 인정한 각종 교내외연구에 한함		
가점 및 감점	가점	가점	10	① 외부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제출 건당 2점 ② 과제신청서에 위탁 또는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감점	10	① 연구 및 산학 관련 연구비 환급금 반납 기간 및 교내결과보고서 포기 지연 등을 의미함.(전년도 환불기간 준수) ② 교내연구비 환급 또는 교내 결과보고서(포기) 지연 시 1일 2점 감점	

【별표 5】

비행교원 업적평가(년간 150점)

부문	분류	평가기준	배점 한도 (학기)	배점 한도 (연간)	세부기준
비행 교원 (150)	비행업적	1. 비행시간 : 비행 1시간당 0.5점	50	100	① 학생 비행훈련을 위한 비행교원의 비행시간
	보직	1. 비행교육원장 ; 30점 2. 기타 보직 : 건당 10점	-	50	① 6개월 이상의 비행교육원장 수행 ②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부장 등 총장이 임명한 보직 수행

【별표 6】 <개정 2021.09.01.>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재계약) 평정표

- 교원인사위원장(교학처장) -

피평정자	성 명			소 속		
	직 위		현직위 임용일		본대학 임용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점			배점	의견
1.업적평가 (70점)	최소요건 충족 시	60점 배점				
	가 산 점 (10점)	업적평가점수 비율에 따른 가산점				별도기준적용
2.기타평가 (30점)	소속부서장 (학장) 평가 (10점)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재계약) 평 정표 배점을 근거로 배점				
	학과장/전 임교원 평가 (10점)	비정년계열 교원 재임용(재계약) 평 정표 배점을 근거로 배점				
	대학 본부 평가 (10점)	교수로서의 자질과 대학발전을 위 한 노력 등을 근거로 배점				
합 계						
평가위원장(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종합 의견						
202 년 월 일		평가위원장 (교원인사위원장)		(서명)		